

의안번호	제 485 호
의 결 연 월 일	201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10월 3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5
----------	-----

제출연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제10조(준용규정)에서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조례에서 하위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음

## 2. 주요내용

-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한 준용규정 삭제(안 제10조)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취

### □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법령 입안 시 유의사항) 법령안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령 입안 시 법령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1. 입법의 필요성

- 가.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검토를 기초로 할 것
- 나. 입법 내용이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일반 국민의 준수를 기대할 수 있는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실효성을 가질 것

#### 2. 입법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 가.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는 내용으로서 개인의 지위 존중과 공공복리의 요청이 조화를 이루고, 권한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여 부당하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국민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회질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
- 나. 헌법과 상위법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하위법령과 관련하여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할 것

#### 3. 입법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 가. 다른 법령(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법령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
- 나. 입법 내용이 해당 법령의 소관 사항에 적합할 것